우버人사이트

매경미디어그룹 바로가기 >



Home

캠퍼스에서

KOTRA・韓商의 눈

Tech&

Life&Culture

Society&Business













추천 기사



이명원회계사와 풀어보는 미국세법

(이명원 회계사와 풀어보는 미국세법) 한국에 거주하는 미 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2)

-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102,100까지는 세금안낸다?



이명원 | MW LEE, CPA P.C. 대표

입력: 2017.12.22 14:56:18 수정: 2017.12.22 20: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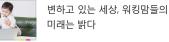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자신만의 이미지, '얼굴이 참 좋 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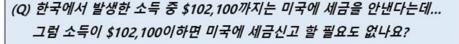
뇌를 건강하게 하는 시작, 학습 자세 바로 잡으면 집중력이 쑥



자신의 열정과 역량을 드러내 려면 활동의 다양성보다는 내 용이 중요하다



내 자신을 돌아볼 공간, 누구에 게나 공터가 필요하다



(A)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102,100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EARNED INCOME'이 있으면 그 중 최대 \$102,100을 미국의 세금계산할 때 소득에서 차감해준다는 것이다. 그렇게하면'EARNED INCOME'이 \$102,100이하인 사람의 과세소득은 0이 될것이므로 낼 세금이 없게 된다. 이를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한다.

그러나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을 적용받아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하여 세금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세법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이는 세금신고방법(filing status)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을 적용받은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대상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때 신고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총소득 기준은 "Earned Income Exclusion"

한가지 유의할 것은,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상 규정이어서, 어떤 주(state)는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주(state)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정부세금(state tax)를 내야할 경우도 있다.



인기뉴스

더보기>

6/24/2018 우버人사이트

지난 칼럼에서 살펴 봤듯이 미국시민권자는 어느나라에 거주하든, 거주하는 나라에 세금을 냈든 안냈든 전세계의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역시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가 조세조약 등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신고를 할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국적 포기세 문제와 이민법상 영주권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세금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한다. 아마 여러분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102,100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102,100까지는 세금안낸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02,100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한국세 법도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있으니,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여기서 'EARNED INCOME'이란 급여,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흔히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이자나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를 'UNEARNED INCOME'이라 함)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자나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전액 과세된다는 의미이다.

누가 이런 혜택을 받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해외(한국)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첫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해외에 거주자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①bona fide resident test 나 ②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심시된 라면 용가 로만 어내 2리시 납파…라 손흥민 골에 오소리오 감독 "훌륭해…현재와... 클라라 파격적 中 화보…아찔함 업그레이드 JP 별세에 다시 관심…전두환노태우 근황은 오승아 란제리 화보…레인보우 몸매 퀸 "양도세 엎친 데 종부세 덮쳐"…더 얼어붙는 ...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中개입·더딘 北비핵... 신세계百 '워라벨'…개점 11시로 늦춘다 캄보디아서 중국인 상대 '아기공장' 적발…대.. '붉은 행성' 화성에 웬 푸른 모래언덕(?)

부동산 연예

증권

6/24/2018 우버人사이트

반면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 없이 단순히 어느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연속된 12개월이란 반드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라든지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와 같이 어느기간 중 12개월이 연속적이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 권자는 대부분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요건이 충족 될 것이다.

공제금액은 얼마인가?

한국 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중 최대 \$102,100(2017년 기준)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때 한도액은 일 단위(daily basis)로 계산한다.

그리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부부둘 다 한국에서 'EARNED INCOME'이 있다면, 각각 최대 \$102,100씩, 합산하면 최대 \$204,200(1인당 \$102,100 x 2)을 공제받을 수 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규정이 아니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즉,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된다. 그리고 한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연도에는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만약, 더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중 혜택은 안돼- Foreign tax credit 못 받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여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했다면, 제외된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은 또 다시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해외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줬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을 다시 인정해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리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받고자 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정부세금(state tax)은 낼 수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연방소득세(federal tax)상의 규정이다. 그래서 어떤 주(state)는 주정부세금(state tax)을 계산할 때 이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주(state)

6/24/2018 우버人사이트

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주(state)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비록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MW LEE, CPA P.C. 대표 회계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원회계사와 풀어보는 미국세법

더보기

한국 거주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4)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3) 해외근로소득공제: \$102,100까지는 세금 안 낸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

							도움말
로그인 후,	댓글 작	성이 가성	능합니다				

매일경제

매일경제 회사 매경닷컴 회사

회사소개 | 회사연혁 | 광고안내 | 구독신청 | 인재채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의견 | 서비스문의

매경 Family Site <u>매경 Family site</u> ▼ 이메일추출금지 | 윈도우XP SP2설정 | 뉴스이용규칙 **RSS**

Copyright (c) 2013 매경닷컴. All rights reserved.